

#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
----------	-----

제출연월일 : 2000. 2 . 2 .

제 출 자 : 김진석의원외3인

## 1. 개정이유

지방의회 운영제도 개선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1999.8.31일자(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고, 세부사항인 동법 시행령이 1999.12.31(대통령령 제16,672 )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명칭상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안제1조 · 제3조)
- 나.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개정(안 제2조제2항)
- 다. 회기수당(종전 회의수당)을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개정(안 제3조제3항)
- 라. 의원 국내여비중 숙박비 상향(19,500원⇒22,000)조정(안 제4조제2항)
- 마. 의원 국외여비중 숙박비 상향조정(안 제4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조례 제 호

##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제3조의 제목,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월 35만원"을 "월55만원"으로하고 제3조제3항중 "1일에 5만원"을 "1일에 7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별표1"과 "별표2"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u>회의수당</u>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회의수당</u>----- -----</p>
<p>제2조(의정활동비)① (생략)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u>월 35만원</u>으로 한다 ③ -④ (생략)</p>	<p>제2조(의정활동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월55만원</u>----- ③ -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u>회의수당</u>)①의원이 회기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u>회의수당</u>을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의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회의와 관련된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출석여부에 불구하고 공휴일에도 <u>회의수당</u>을 지급한다.</p>	<p>제3조(<u>회기수당</u>) ----- ----- -----<u>회기수당</u>----- ----- ----- ----- ----- ----- ----- ----- ----- ----- -----<u>회기수당</u>-----</p>
<p>② <u>회의수당</u>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p>	<p>② <u>회기수당</u>----- -----</p>
<p>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u>회의수당</u>은 출석일수 <u>1일에 5만원</u>으로 한다</p>	<p>③ -----<u>회기수당</u>----- -----<u>1일에 7만원</u>-----</p>

[별표 1]

##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4조2항과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 박 료 (10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 부 의 장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의 원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2,000	18,000

- 비고: 1. 평창군 안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일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주무관청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여행시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4조제2항과관련)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 부의장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등 정액		가등급25 나등급25 다등급25 라등급25	가등급137 나등급99 다등급76 라등급65	가등급107 나등급78 다등급58 라등급49	140	170	195
의원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20 나등급20 다등급20 라등급20	가등급120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51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싱가포르, 대만, 북경, 하노이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리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 (4) 중동·아프리카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루ン, 우간다, 코트디부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

- (1) 아세아·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부루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 (3) 유럽주 :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  
슬라비아
-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  
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미얀마, 스리랑카, 튀지, 네팔, 몽골
-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수리남
-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분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상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